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단52176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복단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베이스스

담당변호사 최영원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8. 25.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체결한 별지 목록 기재 1, 2항의 부동산에 대한 2017. 3. 5.자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1, 2항의 부동산에 대한 2017. 3. 7. 접수 제769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24805 정산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14. ‘C은 원고에게 187,170,86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17. 4. 14. ‘C은 원고에게 161,755,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2심 판결’이라 하고 이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22697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거쳐 2017. 7.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3. 5. 피고와 사이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는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3. 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76981호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초하여 2017. 2. ~ 3.경 C의 각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2017. 2. 17. C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2017. 2. 21. C의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2017. 3. 2. C의 F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17. 3. 6. C이 소유한 주식회사 G 골프회원권에 대한 각 압류명령을 받아 추심절차를 진행한 결과 C의 D은행 예금채권과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서 합계 63,610,983원을 추심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추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완전한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이 사건 2심 판결의 확정 후인 2018.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명101701 재산명시를 신청하여 2018. 7. 3. 재산명시명령을 받았고, 2018. 9. 17. 열린 재산명시기일에서 C은 ‘이 사건 부동산,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G 골프회원권,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C이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소는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한다.

2)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재산으로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미 2017. 3.경 이 사건 1심 판결에 기하여 위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추심에 나섰지만 주효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C은 재산명시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을 적어 제출하였고 원고는 재산명시기일인 2018. 9. 17. 무렵 이를 알게 되었다고 볼 것인데, 당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가등기가 이미 마쳐진 상태이므로 원고로서는 C이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이로써 C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어 결국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는 위 재산명시기일 무렵 C의 D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E회계법인에 대한 급여채권, G 골프회원권의 구체적 금액을 알지 못하여 C이 채무초과상태인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미 C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지만 주효하지 못하여 재산명시신청을 하게 되었고, C이 제출한 재산목록에 유일한 부동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이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원고가 C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 2018. 9. 17.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8. 19.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통정허위표시 무효에 기한 말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C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과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원고가 2020. 8. 26. 이 사건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백규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파트 동 제3
층 호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파트 동 제3
층 호, 끝,

